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96
----------	------

제출년월일 : 2008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범위 확대, 지급시기 조정 및 금액 상향조정을 통해 지역 내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 증진 도모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범위 확대
 - 당 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자 제외<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변 경: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포함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시기 변경
 - 당 초: 분기 1회
 - 변 경: 2월 1회(매 짝수월 25일 이내)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금액 상향 조정
 - 당 초: 월 2만원
 - 변 경: 월 3만원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참 부 1. 의안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1부.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자

제3조제1호의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제3항 중 “지급결정이 있는 달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그리고 이후 매분기 다음달 10일 이내에”를 “매 짝수월 25일 이내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생략) 1.~3. (생략) 4. 6.25 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 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다. 5. (생략)</p> <p>제3조(지원사업)(생략) 1.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2(생략)</p> <p>제4조(지원대상자)①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의거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제외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 자.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자.</p> <p>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②(생략) ③참전명예수당은 지급결정이 있는 달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그리고 이후 매분기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청서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대하여는 첨부 서류 생략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6.25 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 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다. 5.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원사업)(현행과 같음) 1. _____ 월 3만원의 _____ 2.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②(현행과 같음) ③ _____ 매 짝수월 25일 이내에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관계 법령

참전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10.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07.1.3]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 (적용대상 <개정 2002.1.26>)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신설 2002.1.26>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1.3>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뇌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다시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제4조 (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10.1.]]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22 대통령령 제20563호]

제2조 (법적용배제 대상범죄 등) 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05.6.10, 2006.1.13>

1. 「형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 가.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및 그 미수죄
 - 나.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3조의 죄 및 그 미수죄
 - 다. 제297조 내지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 라. 제333조 내지 제339조의 죄 및 그 미수죄. 다만 미수죄는 제337조의 경우에는 상해에 이르게 한 때를, 제338조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를 제외한다.
 - 마.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및 그 미수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의 죄 및 그 미수죄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의 죄 및 그 미수죄

②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참전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협박 또는 기물파손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3조 (법적용배제 등의 결정절차) ①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없이 그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10>

1.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2.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자에 대한 등록여부의 결정

②국가보훈처장이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0>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참전유공자증서의 교부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5.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7.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상이군경·무공수훈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참전명예수당 지급 여부 질의사항 검토 의견

□ **질의내용**

-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 동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제외된 상이군경·무공수훈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능 여부

□ **검토의견**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라 함은 6.25전쟁이나 월남 전쟁에 참전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제7호의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6.25전쟁이나 월남 전쟁에 참전한 경우 참전유공자로 볼 수 있음.
- 다만, 6.25전쟁이나 월남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무공수훈자 및 국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참전유공자로 볼 수 없음
- 귀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재정여건 및 지역 주민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전상군경·무공수훈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상이군경, 미망인, 유족,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

제천시 공고 제2008 -986호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제천시장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범위 확대, 지급시기 조정 및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지역내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 증진 도모

3.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범위 확대
 - 당 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자 제외<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변 경: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포함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시기 변경
 - 당 초: 분기 1회
 - 변 경: 2월 1회(매 짝수월 25일 이내)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금액 상향 조정
 - 당 초: 월 2만원
 - 변 경: 월 3만원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0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천시(참조 : 자치운영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641-5464, FAX 641-546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지방행정서 기	시정팀장	자치행정과장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공고 제2008-986호
3. 공고기간 : 2008. 10. 06. ~ 10. 26. (20일)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붙임
6. 공고결과
 - 조 회 수 : 88명
 - 의견제시자 : 1명 「제천시 의림동 223-2 중앙주택 13-302 권영주」
 - 의견내용 : 참전 유공자들의 건강 상태와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할수 있도록 조치 요망
 - 검토결과 : 입법예고 전 검토한 내용으로써 「전산화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1,000명의 자료를 매월 수기로 갱신 조회할 수 있는 행정력 부족」으로 매월 지급조치 어려움이 있음.
 - 반영여부 : 부.

붙 임 : 공고안 1부.(별지) 끝.